

2019년도 홍천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홍천군

HONGCHEON COUNTY

- 2019년 홍천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
2019년도 살림살이 이렇게
편성하였습니다.

◆ 지방재정법 제60조에 의거 2019년도 당초예산
편성 결과에 대한 재정공시 자료임

○ 2019년도 홍천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 예산규모 : 세입·세출예산, 지역통합재정통계
- 재정여건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통합재정수지
- 재정운용계획 : 중기지방재정계획, 성인지 예산현황, 주민참여 예산현황, 성과계획서,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예산 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국외여비 편성현황,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 재정운용성과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세입 확충),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목 차

1. 공통공시 총괄	1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2
2-2 세출예산	3
2-3 지역통합재정통계	4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5
3-2 재정자주도	6
3-3 통합재정수지	7
4. 재정운용 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9
4-2 성인지 예산현황	10
4-3 주민참여 예산현황	11
4-4 성과계획서	13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4
4-6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15
4-7 국외여비 편성현황	18
4-8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19
5. 재정운용 성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20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21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2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2

2019년 홍천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2019. 2.

홍천군수

◆ 우리 홍천군의 '19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5,946억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620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761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4,356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829억원입니다.

◆ 우리 홍천군의 '19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세입 개편 전에는 16.7%, 세입 개편 후에는 12.6%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세입 개편 전에는 72.65%, 세입 개편 후에는 68.55%입니다.

※ 세입과목 개편내용 : '14년부터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 우리 홍천군의 '19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19억원이 흑자이며, 일반회계의 경우 271억원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홍천군의 재정은 유사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예산규모 및 재정자립도는 조금 낮으나, 재정자주도가 높아 재정운영의 자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살림규모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채무는 없으며, 의존재원이 높은 반면 자체재원 규모가 낮아 자체수입 확충과 체납액 축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군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hongcheon.gangwon.kr>) - 정보공개/개방⇒예산/재정공시)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홍천군 기획예산담당관 이태용(033-430-2031~4)

1 공통공시 총괄

☐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강원도 홍천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9년도 (A)	'18년도 (B)	증감 (C=A-B)	'19년도 (A)	'18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5,946	5,326	620	5,949	5,420	530
	세출예산	5,946	5,326	620	5,949	5,420	530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16.70	17.77	△1.07	24.32	23.42	0.90
	재정자주도	72.65	73.06	△0.41	64.25	63.15	1.10
	통합재정수지	1,855	1,682	173	3,189	2,325	864
재정운영계획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영상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편성기 준별 운영상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국외여비 편성현황	6	5	1	5	4	1
	행사·축제 경비 편성 현황	58	37	21	47	45	2
재정운영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 세 감 액 현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 세 인 센 티 브 현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유사 지방자치단체 :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인천 강화군, 인천 옹진군, 울산 울주군, 경기 양평군, 강원 홍천군, 충북 음성군, 충남 부여군, 충남 홍성군, 충남 예산군, 전북 완주군, 전북 고창군, 전북 부안군, 전남 고흥군, 전남 장흥군, 전남 해남군, 전남 무안군, 경북 칠곡군, 경남 함안군, 경남 거창군

※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는 세입개편 전 값입니다.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9년도 홍천군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94,638	495,135	39,268	25,919	34,316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435,015	464,848	478,572	532,640	594,638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5		2016		2017		2018		2019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65,812	100	386,100	100	392,880	100	446,784	100	495,135	100
지방세	34,739	9.50	38,662	10.01	38,905	9.90	42,914	9.61	45,453	9.18
세외수입	9,603	2.63	16,008	4.15	14,687	3.74	16,202	3.63	16,943	3.42
지방교부세	210,320	57.49	202,052	52.33	203,000	51.67	239,000	53.49	269,000	54.33
조정교부금 등	7,000	1.91	8,000	2.07	8,000	2.04	8,000	1.79	8,000	1.62
보조금	88,744	24.26	101,152	26.20	107,987	27.48	120,368	26.94	135,439	27.35
지방채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5,406	4.21	20,226	5.24	20,300	5.17	20,300	4.54	20,300	4.10

-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 1년 동안 홍천군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94,638	495,135	39,268	25,919	34,316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435,015	434,848	478,572	532,640	594,638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5		2016		2017		2018		2019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365,812	100	386,100	100	392,880	100	446,784	100	495,135	100
일 반 공 공 행 정	24,076	6.58	19,028	4.93	16,594	4.22	18,070	4.04	17,534	3.54
공공질서 및 안전	3,297	0.90	4,746	1.23	8,939	2.28	7,418	1.66	9,352	1.89
교 육	3,998	1.09	4,516	1.17	5,342	1.36	5,995	1.34	6,862	1.39
문 화 및 관 광	18,988	5.19	28,434	7.36	24,497	6.24	30,872	6.91	32,939	6.65
환 경 보 호	25,454	6.97	33,108	8.57	30,767	7.83	32,359	7.24	42,828	8.65
사 회 복 지	75,700	20.69	77,022	19.95	82,743	21.06	106,948	23.96	118,662	23.97
보 건	5,936	1.63	6,219	1.61	6,592	1.68	8,233	1.84	9,183	1.85
농 립 해 양 수 산	66,401	18.15	76,299	19.76	85,369	21.73	81,821	18.31	94,065	19.00
산 업 · 중 소 기 업	7,253	1.98	6,603	1.71	7,670	1.95	8,828	1.98	6,375	1.29
수 송 및 교 통	28,543	7.80	29,454	7.63	21,534	5.48	28,705	6.42	32,110	6.49
국 토 및 지 역 개 발	51,210	14.00	41,520	10.75	41,423	10.54	51,305	11.48	52,850	10.67
과 학 기 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 비 비	4,867	1.33	5,460	1.41	4,648	1.18	4,332	0.97	7,506	1.52
기 타	50,089	13.69	53,691	13.92	56,762	14.45	61,898	13.85	64,871	13.10

-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지역통합재정통계

- ▣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홍천군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당초예산 (A)	2019년 예산 (B)	증감액 (B - A)	비율 (B-A)/A
합 계	540,279	600,001	59,722	11.05
홍천군	532,640	594,638	61,997	11.64
출자·출연기관	7,639	5,363	△2,276	△29.79

- ▶ 당초예산 총계기준
- ▶ 출자출연기관(2개) : (재)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재)홍천문화재단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예산현황 2019)를 참조하세요
(<https://www.hongcheon.gangwon.kr/www/contents.do?key=1781>)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9년도 홍천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세입과목 개편 전에는 16.70%이나, 개편 후에는 12.60%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16.70 (12.60)	495,135 (495,135)	82,696 (62,396)	412,439 (412,439)	0	0 (20,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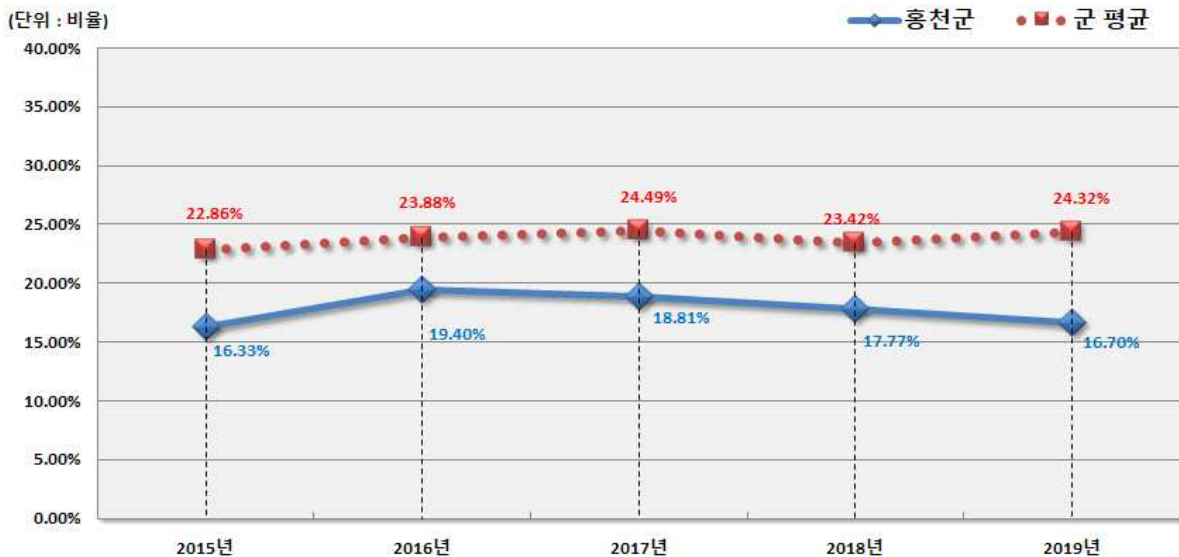
-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당초예산	16.33 (12.12)	19.40 (14.16)	18.81 (13.64)	17.77 (13.23)	16.70 (12.60)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동종자치단체(21개 郡) 평균(24.32%)대비 7.62% 낮으나 이는 이전재원(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이 전년도 대비 12.3%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9년도 홍천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세입과목 개편 전에는 72.65%이나, 개편 후에는 68.55%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자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72.65 (68.55)	495,135 (495,135)	359,696 (339,396)	135,439 (135,439)	0	0 (20,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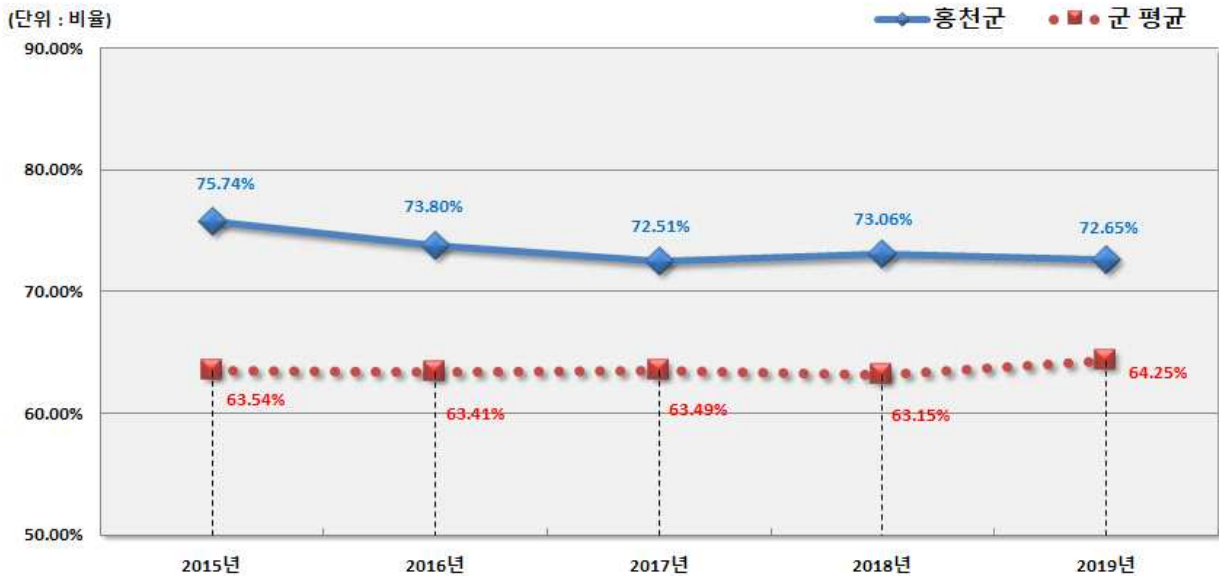
-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 자주자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당초예산	75.74 (71.53)	73.80 (68.56)	72.51 (67.35)	73.06 (68.52)	72.65 (68.55)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총 세입 중 자주재원이 3,597억원으로 우리 군 재정자주도는 전년대비 0.41% 감소하였으나 이전재원 중 보조금이 전년대비 12.52% 큰 폭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이고, 동종자치단체(21개 군) 평균(64.25%)보다 8.4%나 높은 72.65%로 동종자치단체에 비해 재정운용상황이 다소 안정적입니다.

3-3.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 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홍천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계 규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 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511,851	534,424	973	1,900	927	25,354	535,351	△23,499	1,855
일반회계	474,835	468,017	300	0	△300	20,000	467,717	7,118	27,118
기타 특별회계	10,693	25,704	55	200	145	3,294	25,849	△15,157	△11,863
공기업 특별회계	25,455	39,268	0	0	0	2,060	39,268	△13,814	△11,754
기 금	869	1,434	618	1,700	1,082	0	2,516	△1,647	△1,647

-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통합재정수지 1	△19,783	△25,072	△26,491	△24,004	△23,499
통합재정수지 2	346	△145	△135	1,682	1,855

- ☞ 『통합재정수지 1』은 세입에서 당해연도 수입이 아닌 순세계잉여금을 제외하여 235억원이 적자이며,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 2』는 세입규모가 커지게 되어 적자폭이 줄어들어 19억원 흑자입니다.
- ☞ 총 순세계잉여금은 254억원으로 대부분이 사업 집행잔액(사업변경 등으로 인한 불용액포함)으로 사업계획단계의 정확한 수요예측 및 사업량 산출 등의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 ☞ 통합재정수지가 △로 나타나는 이유는 보전수입 및 보전지출을 제외한 순수재정수입과 지출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홍천군의 지방재정계획입니다.

❖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701,131	744,583	752,440	782,950	804,286	3,785,390	3.50
자 체 수 입	79,586	80,663	82,287	83,401	84,916	410,853	1.60
이 전 수 입	532,577	571,696	574,646	600,736	619,203	2,898,858	3.80
지 방 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88,969	92,224	95,506	98,813	100,167	475,679	3.00
세 출	701,131	744,583	752,440	782,950	804,286	3,785,390	3.50
경 상 지 출	133,850	140,133	146,429	150,396	151,638	722,446	3.20
사 업 수 요	567,281	604,450	606,011	632,553	652,648	3,062,943	3.60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 연평균 증가율 = $[(\text{최종연도}/\text{기준년도})^{1/(\text{전체연도 수} - 1)} - 1] \times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홍천군의 2019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39	21,732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	203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3	19,621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4	1,908

▶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hongcheon.gangwon.kr/www/contents.do?key=1781>)

●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 기준	-예산편성 한도 설정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 다음은 홍천군의 2019년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예산규모 (당초예산)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594,638		722	

- ▶ 2019년 당초예산 기준

❖ 2019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액			722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보건소	홍천군 신혼부부 지원사업	9	계속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관광과	용소계곡 안내소 설치(안내간판) 및 버스운행 증설	44	신규사업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상하수도 사업소	상수도 설치	120	"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 방재과	화촌면 농어촌도로 204호선(노내골선) 개설	50	"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행정과	면 경계표지석 설치	12	"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농정과	내촌면 도관2리 사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150	"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 방재과	하천제방 포장	40	"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 방재과	도로(진입로)포장	10	"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 방재과	동면 금계로 소하천배수로 설치	12	"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산림과	양덕원1리~군인아파트(월천리) 둘레길 개설	5	"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설 방재과	팔봉2리 군도9호선(중실2교)선형개량	50	"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상하수도 사업소	북방면 하화계2리 오수관로 설치	170	"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관광과	장항리 둘레길 조성	50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hongcheon.gangwon.kr/www/selectBbsNttList.do?bbsNo=21&key=96>)

4-4. 성과계획서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홍천군의 2019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8	78	155	200	508,919	461,727	47,192
기획예산담당관	1	2	4	9	12,524	9,711	2,813
행정국	1	37	70	94	210,309	198,311	11,997
경제국	1	31	65	63	216,126	195,396	20,730
도민체전추진단	1	1	2	1	3,730	2,000	1,730
의회사무과	1	1	3	2	723	701	22
보건소	1	2	3	12	9,380	8,893	487
농업기술센터	1	2	4	13	12,388	13,202	△814
상하수도사업소	1	2	4	6	43,741	33,514	10,227

-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www.hongcheon.gangwon.kr/www/contents.do?key=1781>)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 ☐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6.70	72.65	23.97	37.07	44.35	79.69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4-6.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총액) (A)	예산편성액 (B)	차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201	60	△101
	부단체장		4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35	235	-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128	47	4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49	
	의원국외여비		32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		4	
지방보조금		17,868	17,957	88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702	702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175	1,175	-
공무원 일·숙직비		116	116	-

-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경비는 2018년부터 총액한도제로 운영
 -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의 차액은 단체장, 부단체장외의 업무추진비(94,200천원)도 포함하여 계산함
-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9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 총액한도(201,077천원)

- 군수 60,000천원, 부군수 40,000천원

- 과장(4급이상), 사업소장, 읍면장 등 94,200천원

- 편성 기준액 산출 산식 : 최근3년('18년~'16년)행정운영경비 평균액(57,450,627천원) $\times 0.0035 = 201,077$ 천원

☞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 총액한도(234,529천원)

- 편성 기준액 산출 산식 : 기초기준액(234,322천원)+정책사업결산 연동액(2,071천원) \times 보정계수(0.1) = 234,529천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 총액한도(128,361천원)

- 편성 기준액 산출 산식 : {의정운영공통경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45,400천원) \times (1 + 0.297) + (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41,520천원) \times (1 + 0.176) + (지방의원국외여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19,667천원) \times (1 + 0.05))} = 128,361천원

※ 2019년도에 한하여 1인당 0.8백만원 범위내에서 한도 조정 가능(1인당 0.5백만원 추가편성)

☞ 지방보조금이 기준액 보다 더 많이 편성된 사유는 보조금 총액한도 제외대상인 도민체전(시도단위 순회행사) 사업비(1,340백만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며, 이를 제외하면 보조금 한도액보다 10억원 이상 적게 편성하였음

☞ 이장·반장 활동보상금 산출내역 : 702,140천원

- 이장 수당 : 200천원 \times 198명 \times 12회 = 475,200천원

- 이장 상여수당 : 200천원 \times 198명 \times 2회 = 79,200천원

- 이장회의 참석수당 : 20천원 \times 198명 \times 24회 = 95,040천원

- 반장 수당 : 50천원 \times 1,054명 \times 1회 = 52,700천원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 기준액(1인 평균단가) 1,320천원(기준액 보다 적게 편성)
- 산출내역 : 1,175,250천원
 - 일반직 : 1,000천원×1,019명 = 1,019,000천원
 - 기간제 : 300천원×100명 = 30,000천원
 - 공무원 종합검진 : 250천원×505명 = 126,250천원

☞ 공무원 일·숙직비 산출내역 : 115,920천원

- 일직(단가 60,000원, 1일 4명 근무, 근무일수 118일) : 60천원×4명×118일 = 28,320천원
- 숙직(단가 60,000원, 1일 4명 근무, 근무일수 365일) : 60천원×4명×365일 = 87,600천원

4-7. 국외여비 편성현황

2019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560,322	563	23	540	0.1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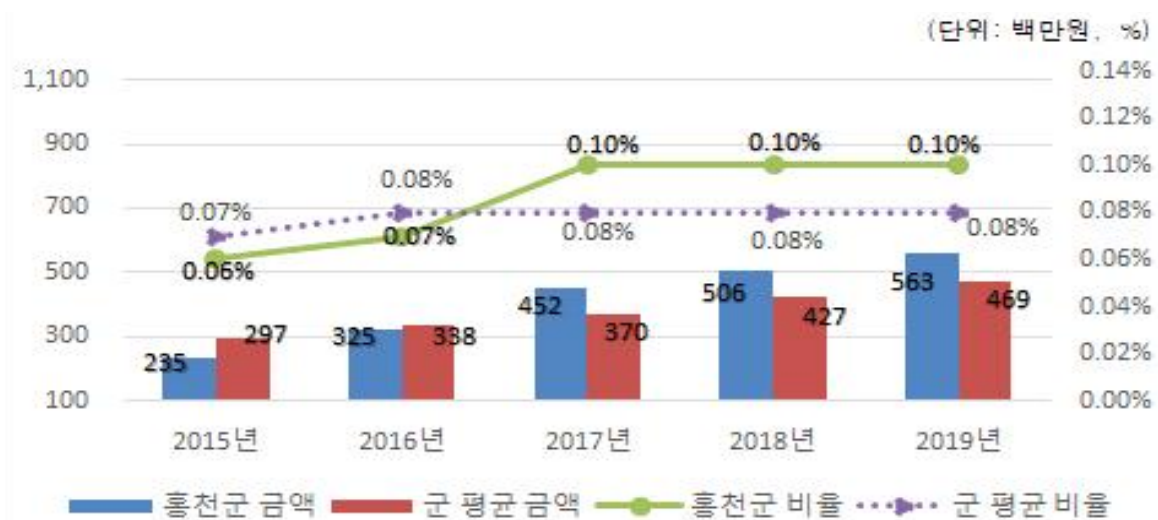
※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예산총계 (A)	409,796	437,341	450,361	501,669	560,322
국외여비 총액 (B=C+D)	235	325	452	506	563
국외업무여비 (C)	33	33	23	23	23
국제화여비 (D)	202	292	429	483	540
비율	0.06	0.07	0.10	0.10	0.10

국외여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 다음은 우리 홍천군이 2019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495,135	5,761	1.16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19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예산액	365,812	386,100	392,880	446,784	495,135
행사·축제경비	6,741	3,364	3,448	3,721	5,761
비율	1.84	0.87	0.88	0.83	1.16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 재정운용성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 ☐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8년	2019년
계	1,271	5,732
인건비 절감	199	108
지방의회경비 절감	24	22
업무추진비 절감	93	137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1,562	343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1,503	5,177
지방청사 관리·운영	960	0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64	-55

- ▶ 2019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8.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 인센티브, (-) 페널티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 ☐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8년	2019년
계	276	145
지방세 징수율 제고	-958	53
지방세 체납액 축소	328	-780
경상세외수입 확충	-477	981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1,376	-109
탄력세율 적용	0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7	0

- ▶ 2019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8.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 인센티브, (-) 페널티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 2018년에 우리 홍천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47
사업추진 부적정	공설임도 설치사업 추진 부적정	47

-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 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 2018년에 우리 홍천군이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해 당 없 음	

-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